

2022. 9. 20.(화)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서 정 호

【 목 차 】

I. 개 황

II.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가. 총괄

나. 예산전용

다. 예산이체

라. 예비비

마. 다음연도 이월

III. 종합검토의견

1. 세입결산

2. 세출결산

I. 개 황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회계는 일반 회계이며, 특별회계, 기금은 없음.

II.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1. 세입결산(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P34~P35)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억 1천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 원과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1억 원임.

[표-1] 자원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별	예산현액 ㉔	징 수 결 정 액 ㉕	수납액	불 납 결 손 액	미수납액	증 감 ㉖=㉕-㉔
합 계	100,000	100,000	100,001	0	0	100,001
경상적세외수입	0	1	1	0	0	1
공공예금이자수입	0	1	1	0	0	1
지방교부세	100,000	100,000	100,000	0	0	100,000
특별교부세	100,000	100,000	100,000	0	0	100,000

2. 세출결산(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P105~P107)

가. 총괄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억 7,252만 6천원으로 예산성립 결정 후 예비비사용액 2억 3,500만원이 증가 하였음.
-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1.9%인 5억 5,113만 1천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139만 3천 원임.

[표-2]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

구분	세출 예산액 (가)	예산성립결정후 증감액 (나)				예산현액 (다)=(가)+(나)	지출액 (라)	집행률 (라)/(다)	다음연도 이월액 (마)	집행잔액 (바)=(다)-(라)-(마)	불용률 (바)/(다)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수입대체 변경						
자치경찰위원회	437,526	0	235,000	0	0	672,526	551,131	81.9	100,000	21,395	2.1
자치경찰행정과	292,861	0	235,000	0	0	527,861	512,369	97	0	15,492	2.9
자치경찰정책과	144,665	0	0	0	0	144,665	38,762	26.7	100,000	5,903	4

-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2,139만 3천원임.

[표-3]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원인별			
		계획변경 등 집행 미발생	예산절감 (유보액)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자치경찰위원회	21,395	-	-	21,395	-

○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표-4]와 같음.

[표-4]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자치경찰행정과	527,861	512,369	15,492	2.9
행정업무추진	144,000	141,650	2,350	1.6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구성	235,000	233,493	1,507	0.6
인사업무추진	15,500	15,285	215	1.4
위원회 업무추진	31,300	30,748	552	1.8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	33,000	30,535	2,465	7.5
기본경비	54,021	46,068	7,953	14.7
인력운영비	15,040	14,590	450	3.0
자치경찰정책과	38,665	32,762	5,903	15.2
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16,500	16,496	4	0.0
기본경비	22,165	16,266	5,899	26.6

나. 예산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한 예산전용 없음.

다. 예산이체(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P111~P112)

○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을 다른 조직으로 이체하는 제도임.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이체액은 5억 1,303만 2천원이며, 세부내역은 [표-5]과 같음.

[표-5] 예산이체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감 액	증 액		
계		756,819	513,032	513,032	-	-
자치행정과	행정 업무추진	118,800	118,800	0	2021.05.21.	5.2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자치경찰행정과	행정 업무추진	0	0	118,800		
자치행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구성	235,000	235,000	0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구성	0	0	235,000		
자치행정과	위원회 업무 추진	31,300	31,300	0		
자치경찰행정과	위원회 업무 추진	0	0	31,300		
자치행정과	인사 업무 추진	15,500	15,500	0		
자치경찰행정과	인사 업무 추진	0	0	15,500		
자치행정과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	28,000	28,000	0		
자치경찰행정과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 조성	0	0	28,000		
자치행정과	역량강화 및 제도 개선	16,500	16,500	0		
자치경찰정책과	역량강화 및 제도 개선	0	0	16,500		
자치행정과	청렴한 자치경찰 정착	6,000	6,000	0		
자치경찰정책과	청렴한 자치경찰 정착	0	0	6,000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198,907	41,567	0		
자치경찰행정과	기본경비	3,137	0	41,567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20,365	20,365	0		
자치경찰정책과	기본경비	0	0	20,365		

라. 예비비(행정문화위원회 결산서, P117)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1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5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억 3,349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50만 6천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예비비 지출 사유는 2021. 5. 20일자 조직개편 및 외부 임차사무실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등으로 세부내역은 [표-6]과 같음.

[표-6] 예비비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지출결정 일자	지출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35,000	233,493	0	1,506		
자치 경찰 행정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구성	사무 관리비	2,400	2,393		7	'21.04.17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공공 운영비	10,000	8,733		1,267	'21.04.17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자산및 물품 취득비	222,600	222,367		232	'21.04.17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마. 다음연도 이월(결산서 첨부서류 P201)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 2021회계연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1개사업 1억원으로 세부내역은 [표-7]과 같음

[표-7] 명시이월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	지출 원인액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자치경찰 위원회	안전한 동네 만들기 추진	시설비	100,000	0	0	100,000	0	회계연도 마감 직전 '21.12.24. 사업비(특별교부 세) 교부로 사업 기간 부족

Ⅲ. 종합검토의견

1. 세입결산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외수입 1억 1천 원으로,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 원과 지방교부세인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세입원인 발생 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는 등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2. 세출결산

- 세출예산 현액대비 81.9%인 5억 5,113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2,139만 5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임.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은 [표-4]의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같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표-8]와 같이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에 철저를 기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표-8] 예산현액 대비 20% 이상 불용률 발생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기본경비	22,165	16,266	5,899	26.6